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0
----------	-----

2015. 10. 21.(수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(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소방본부장 김충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기

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소방특별회계 설치(안 제2조)
- 소방특별회계 세입(안 제3조)
- 소방특별회계 세출(안 제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#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<sup>\*</sup>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의 개정<sup>\*</sup>에 따라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
- 조문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--

<sup>\*</sup> 제9조(회계의 구분)제2항 후단 '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2014.5.28.>

- 조문의 표현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
-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·재해로 인한 소방 활동과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 소방사무 추진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세입)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
2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에 따라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
3. 소방 관련 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(과징금 등 포함) 및 각종 수수료 수입
4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국고보조금(기금 등 포함)
6.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공유재산 임대 수입 등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
2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
3.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제반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

4. 소방청사 신축(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 등 포함) 사업 및 노후 청사 개선 사업
5.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에 따른 의용소방대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업비
6.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(기금 포함) 사업비
7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5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로서 일반 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(단서신설)2014.5.28.>

### 부칙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### □ 지방세법

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·해저자원, 관광자원, 수자원,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·개선사업,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

1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,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하자원,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 발전·화력발전(이하 "특정자원"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선박 및 토지(이하 "특정부동산"이라 한다)